# 2. 不動産仲介業法 施行規則 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538號, 1993. 9. 27

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7조제2항중** "내무부장관"을 "건설부장관"으로 한다.

**제27조제5호중** "내무부장관"을 "건설부장관"으로 한다.

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31조(협회설립인가신청시의 구비서류)**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협회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건설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한다. 이 경우 "설립허가신청서"는 이를 "설립인가신청서"로 본다.

[별지 제5호서식]·[별지 제8호서식] 및 [별지 제10호서식]중 "내무부장관"을 각각 "건설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□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□

정부조직법의 개정(1990. 12. 27. 법률 제4,268호)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의 소관부서가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서식 기타 내용중 내무부장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 <건설부 제공>